

오산시 자치법규안 예고

「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오산시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3년 11월 17일

오산시의회의장

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성길용 의원 발의)

1. 제안이유

- 환경·사회·지배구조(ESG)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에 ESG경영 도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시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-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조)
- 지원사업·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6조 및 제7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8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- 제출기일 : 2023년 11월 22일까지
-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오산시의회 홈페이지 등
- 제출서식 : 조례안 예고에 대한 의견서
(오산시의회 홈페이지>알림마당>입법예고>공지)
-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, 연락처번호, 의견
- 제출기관 : 오산시의회(전문위원실)
 - 우편번호 : 18132
 - 주 소 : 오산시 성호대로 141(오산동, 오산시의회)
 - 전 화 : 031)8036-8032
 - 전자메일 : kbh0810@korea.kr

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오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ESG 경영”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(Environment), 사회(Social), 지배구조(Governance)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.
2. “중소기업”이란 오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.
3. “공공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
 - 가.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
 - 나. 「오산시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시장의 책무) ① 오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(이하 “중소기업등”이라 한다)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5조(기본계획) 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 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.)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
2.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
3.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4.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지원사업)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ESG 경영 홍보 및 교육
2.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
3.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
4.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제7조(실태조사) 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 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·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.

제8조(협력체계 구축)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,

다른 지방자치단체, 국내·외 기업,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